

제8절

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

1. 사업설명

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

2. 관련규정

- 방위사업청 훈령 「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 규정」
- 국방기술진흥연구소 「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세부 운영 규정」

3. 지원내용

- 규모 : 연도별 예산현황에 따라 다름

* '22년 지원규모 : 11.45억원

• 대상기업

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, 구성품, 부품,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

- 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
- ②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(제조·수리·가공·조립·시험·정비·재생·개량 또는 개조)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
- ③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
 -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기업
 -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도는 유사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등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 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기업
-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

● 세부내용

구분	지원내용	지원율	지원 한도
해외바이어 발굴 지원	외국 정부 및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, 무역 촉진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	수출마케팅 활동 지원비 등 (체재비용 제외)	
해외인증 획득 지원	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(시스템 및 제품 인증)획득 비용 지원	소요비용의 70%	통합한도 최대 3천만원
수출컨설팅 지원	해외 목표시장 정보 조사 및 법률·회계 등 해외 영업 및 수출 관련 컨설팅 지원	소요비용의 70%	
해외성능시험 지원	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른 해외성능시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	소요비용의 70%	최대 3천만원 (연1회)

4. 참여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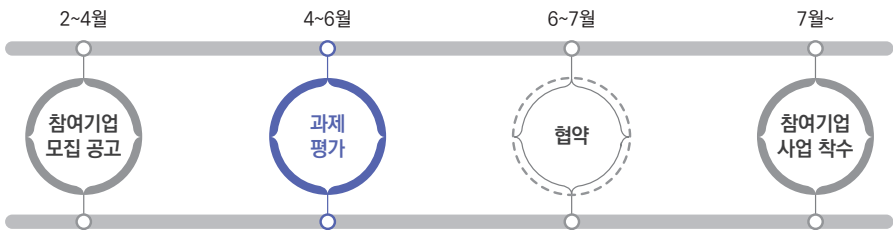
- **사업 공고**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(<http://www.krit.re.kr>) 및 주요기관 인터넷
 - * 방위사업청, 국방기술진흥연구소, 한국방위산업진흥회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
 - * 해외바이어발굴의 경우, 중소기업 DB POOL로 등록된 기업 우선 지원 예정
- **사업 공고 확인 후**
 - 접수기간 내 유망수출품목발굴 사업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
- **제출처 및 문의**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지원팀
 - * 주 소 : (52851)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

5. 추진일정

공 고	계획서 접수	과제평가	협약체결	사업착수
2~4월	2~4월	4~5월	6월	7월

*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6. 세부절차



7. 담당부서 및 연락처

- **담당부서** : 방산진흥본부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지원팀
- **연락처** : 055-751-5803